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42억 9천만 특별인출권을 출자하고, 유럽부흥개발은행 일반증자에 4,034만 유로를 출자하여 총 42억9천만 특별인출권 및 4,034만 유로를 출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09. 24. ~ 11. 0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1	국제통화기금에 출자	42억9천만 특별인출권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별표 10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5	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	4,034만 유로
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
연 락 처	(044) 215 - 8725